|  |  |  |
| --- | --- | --- |
| **재정부, 세무총국의 리스 고정자산 매입세액 공제 등 증치세 정책에 관한 통지**재세[2017]90호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리스 고정자산 매입세액 공제 등 증치세 정책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2018년 1월 1일부터 납세자가 고정자산 및 부동산 리스 시 일반과세방법 과세항목뿐만 아니라 간이과세방법 과세항목, 증치세 면제 항목, 단체 복리 또는 개인이 소비하는 것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으로부터 전액 공제하는 것을 허가한다. 2. 2018년 1월 1일부터 납세자는 이미 승차권을 판매하였으나 고객이 기한을 넘겨 소비하지 않아 취득한 운수 기간경과 승차권 수입에 대해서는 “교통운수서비스”에 따라 증치세를 납부한다. 납세자는 고객에게 승차권을 환불 처리해주고 고객에게 수취한 환불 비용, 수속 비용 등 수입은 “기타현대서비스”에 따라 증치세를 납부한다. 3. 2018년 1월 1일부터 항공운수 판매대리기업은 경외 항공 구간 항공권 대리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취한 모든 금액과 가격 외 비용에서 고객에게 수취하고 기타 단위 또는 개인에게 지불한 경외 항공 구간 항공권 결산 금액과 관련 비용을 공제한 후의 잔액이 매출액이다. 그중, 경내 단위 또는 개인에게 지불한 금액은 세금계산서 또는 여행 일정표가 합법적인 유효 증빙이다. 경외 단위 또는 개인에게 지불한 금액은 수령 날인한 영수증이 합법적인 유효 증빙이며, 세무기관은 수령 날인한 영수증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경외 공증기구의 확인증명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항공 운수 판매대리기업은 <항공운수 판매대리 자질 인가방법>에 근거 중국항공운수협회에서 발급한 ‘항공운수 판매대리업무 자질 인가증서’를 취득한 것을 가리키며, 중국 항공운수기업 또는 중국으로 취항하는 외국항공운수기업의 위탁을 받아, 쌍방이 체결한 위탁 판매대리계약서에 따라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뜻한다. 4. 2016년 5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납세자는 하청, 임대, 교환, 양도, 출자 등의 방식을 취해 도급지를 농업생산자에게 농업생산 용도로 양도하는 경우 증치세를 면제한다. 본 통지 발표 전 이미 징수한 증치세는 이후 월별 납부해야 할 증치세에서 공제하거나 또는 환급처리를 할 수 있다. 5. <재정부, 세무총국의 자산관리상품 증치세 유관 문제에 관한 통지>(재세[2017]56호) 유관 규정에 근거 2018년 1월 1일부터 자산관리상품 관리자가 자산관리상품을 운영하여 제공한 대출 서비스 및 발생한 일부 금융상품 양도업무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매출액을 확정한다. 5.1 대출 서비스 제공은 2018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이자 및 이자 성격의 수입이 매출액이다.5.2 2017년 12월 31일 전 취득한 주식(매각제한조건부 유통주 불포함), 채권, 기금 및 비화물선물을 양도하는 경우, 실제 매입가 기준으로 매출액을 계산하거나 또는 2017년 마지막 거래일의 주식 종가(2017년 마지막 거래일 마감시간의 주식, 마감 전 마지막 거래일 종가) 채권평가(중채금융평가중심유한공사 또는 중증지수유한공사가 제공한 채권평가), 펀드배당 순가치, 비화물선물 결산가격을 매입가로 하여 매출액을 계산하는 것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6. 210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납세자가 농가, 소형기업, 영세기업 및 개인사업자에게 대출 및 채권발행을 위한 융자담보를 제공해 취득한 담보비용 수입 및 상술한 융자담보(이하 ‘원(原) 담보’)로 재담보를 제공해 취득한 재담보비용 수입은 증치세를 면제한다. 재담보 계약이 여러 개의 원(原)담보 계약과 대응하는 경우, 원(原)담보 계약은 모두 증치세 면제정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재담보 계약은 규정에 따라 증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납세자는 관련 면세 증명자료를 보존 비치하여야 하며, 단독 결산이 면세 조건에 부합하는 융자담보비용과 재담보비용 수입일 경우, 현행 규정에 따라 주관세무기관에 납세 신고를 처리한다. 단독 결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치세를 면제할 수 없다. 농가는 장기(1년 이상) 향진(성관진(번역자 주: 행정기관 소재지의 명칭) 불포함) 행정관리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을 가리키며 또한 장기간 성관진 관할 행정촌 범위 내에 거주하는 주민과 호적이 해당 지역은 아니나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 및 국유농장의 직원을 포함한다. 향진(성관진 불포함) 행정관리구역 내 및 성관진 관할 행정촌 범위 내의 국유경제의 기관, 단체, 학교, 기업∙사업 단위에 소재한 단체 호적, 해당 지역 호적을 가졌으나 타 지역에서 가족단위로 1년 이상 생계를 도모하는 주민은 도급경작지 보유여부에 관계없이 농가에 속하지 않는다. 농가는 호(户)가 통계단위이며 농업생산 경영에 종사할 수 있으며, 비농업생산 경영에도 종사할 수 있다. 농가 담보 및 재담보의 판정은 원(原)담보 효력 발생시 피담보인이 농가에 속하는지 여부가 기준이 된다. 소형기업, 영세기업은 <중소기업 유형구분 기준규정>(공신부연기업[2011]300호)의 소형기업과 영세기업에 부합하는 기업을 뜻한다. 그중, 자산총액과 종업원 지표는 모두 원(原)담보 효력 발생 시 실제상태에 따라 확정한다. 영업수익 지표는 원(原)담보 효력 발생 전 12개 자연월(번역자 주: 매월 1일에서 그 달의 마지막 날)의 누적 수로 확정하며, 12개월 이 되지 않은 경우 이하 공식에 따라 계산한다. 영업수익(년)=기업 실제 존속기간 영업수익/기업 실제 존속 월수 × 12<재정부, 세무총국의 영업세의 증치세 개정 징수 시범 전면 추진에 관한 통지>(재세[2016]36호) 첨부 3<영업세의 증치세 개정 징수 시범 과도 정책의 규정> 제1조 제(24)항에 규정된 중소기업 신용담보 증치세 면제정책은 2018년 1일 1일부로 집행을 중지한다. 납세자는 중소기업 신용담보 증치세 면제정책을 향유하고 있으나 2017년 12월 31일 전 만 3년이 되지 않은 경우, 3년이 될 때까지 계속 향유할 수 있다. 7. 2018년 1월 1일부터 납자세가 지불한 도로, 다리, 수문 통행료는 이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7.1 납세자가 지불한 도로 통행료는 유료 도로 통행료 증치세 전자 보통세금계산서 상 명기된 증치세액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세자가 지불한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해 잠시 동안 유료 도로 통행료 증치세 전자 보통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는 경우, 수취한 통행료 세금계산서(재정영수증 불포함, 이하 동일) 상 명기된 요금을 근거로 아래 공식에 따라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계산한다. 고속도로 통행료 공제 가능 매입세액=고속도로 통행료 세금계산서 상 명기된 금액÷(1+3%)×3%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세자가 지불한 1급 및 2급 도로 통행료에 대해 잠시 동안 유료 도로 통행료 증치세 전자 보통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는 경우, 수취한 통행료 세금계산서 상 명기된 요금을 근거로 아래 공식에 따라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계산한다. 1급 및 2급 도로 통행료 공제 가능 매입세액=1급 및 2급 도로 통행료 세금계산서 상 명기된 금액÷(1+5%)×5%7.2 납세자가 지불한 다리 및 수문 통행료는 당분간 취득한 통행료 세금계산서 상 명기된 요금을 근거로 아래 공식에 따라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계산한다. 다리 및 수문 통행료 공제 가능 매입세액=다리 및 수문 통행료 세금계산서 상 명기된 금액÷(1+5%)×5%7.3 본 통지에서 일컫는 통행비는 유관 단위가 법 또는 규정에 의거 설립하여 징수한 도로 통행료, 다리 통행료와 수문 통행료를 뜻한다.<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유료 도로 통행료 증치세 공제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재세[2016]86호)는 2018년 1월 1일부터 집행을 중지한다. 8. 2016년 5월 1일부터 사회단체가 걷은 회비는 증치세를 면제해 준다. 본 통지 발표 전 이미 징수한 증치세는 이후 월별 납부해야 할 증치세에서 공제하거나 또는 세금 환급으로 처리할 수 있다. 사회단체는 국가 유관 법률법규에 근거 설립 또는 등기하여 <사회단체법인 등기증서>를 취득한 비영리법인을 가리킨다. 회비는 사회단체가 국가 법률법규, 정책 허가 등 범위 내에서 사회단체 정관의 규정에 따라 수취한 개인회원 및 단위회원과 단체회원의 회비를 뜻한다. 사회단체가 경영 서비스성 활동을 전개하며 취득한 기타수입은 일률적으로 규정대로 증치세를 납부한다. 재정부세무총국2017년 12월 25일 |  | **财政部、税务总局关于租入固定资产进项税额抵扣等增值税政策的通知**财税〔2017〕90号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财政厅（局）、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新疆生产建设兵团财务局：　　现将租入固定资产进项税额抵扣等增值税政策通知如下：　　一、自2018年1月1日起，纳税人租入固定资产、不动产，既用于一般计税方法计税项目，又用于简易计税方法计税项目、免征增值税项目、集体福利或者个人消费的，其进项税额准予从销项税额中全额抵扣。　　二、自2018年1月1日起，纳税人已售票但客户逾期未消费取得的运输逾期票证收入，按照“交通运输服务”缴纳增值税。纳税人为客户办理退票而向客户收取的退票费、手续费等收入，按照“其他现代服务”缴纳增值税。　　三、自2018年1月1日起，航空运输销售代理企业提供境外航段机票代理服务，以取得的全部价款和价外费用，扣除向客户收取并支付给其他单位或者个人的境外航段机票结算款和相关费用后的余额为销售额。其中，支付给境内单位或者个人的款项，以发票或行程单为合法有效凭证；支付给境外单位或者个人的款项，以签收单据为合法有效凭证，税务机关对签收单据有疑义的，可以要求其提供境外公证机构的确认证明。　　航空运输销售代理企业，是指根据《航空运输销售代理资质认可办法》取得中国航空运输协会颁发的“航空运输销售代理业务资质认可证书”，接受中国航空运输企业或通航中国的外国航空运输企业委托，依照双方签订的委托销售代理合同提供代理服务的企业。　　四、自2016年5月1日至2017年6月30日，纳税人采取转包、出租、互换、转让、入股等方式将承包地流转给农业生产者用于农业生产，免征增值税。本通知下发前已征的增值税，可抵减以后月份应缴纳的增值税，或办理退税。　　五、根据《财政部、税务总局关于资管产品增值税有关问题的通知》（财税〔2017〕56号）有关规定，自2018年1月1日起，资管产品管理人运营资管产品提供的贷款服务、发生的部分金融商品转让业务，按照以下规定确定销售额：　　（一）提供贷款服务，以2018年1月1日起产生的利息及利息性质的收入为销售额；　　（二）转让2017年12月31日前取得的股票（不包括限售股）、债券、基金、非货物期货，可以选择按照实际买入价计算销售额，或者以2017年最后一个交易日的股票收盘价（2017年最后一个交易日处于停牌期间的股票，为停牌前最后一个交易日收盘价）、债券估值（中债金融估值中心有限公司或中证指数有限公司提供的债券估值）、基金份额净值、非货物期货结算价格作为买入价计算销售额。　　六、自2018年1月1日至2019年12月31日，纳税人为农户、小型企业、微型企业及个体工商户借款、发行债券提供融资担保取得的担保费收入，以及为上述融资担保（以下称“原担保”）提供再担保取得的再担保费收入，免征增值税。再担保合同对应多个原担保合同的，原担保合同应全部适用免征增值税政策。否则，再担保合同应按规定缴纳增值税。　　纳税人应将相关免税证明材料留存备查，单独核算符合免税条件的融资担保费和再担保费收入，按现行规定向主管税务机关办理纳税申报；未单独核算的，不得免征增值税。　　农户，是指长期（一年以上）居住在乡镇（不包括城关镇）行政管理区域内的住户，还包括长期居住在城关镇所辖行政村范围内的住户和户口不在本地而在本地居住一年以上的住户，国有农场的职工。位于乡镇（不包括城关镇）行政管理区域内和在城关镇所辖行政村范围内的国有经济的机关、团体、学校、企事业单位的集体户；有本地户口，但举家外出谋生一年以上的住户，无论是否保留承包耕地均不属于农户。农户以户为统计单位，既可以从事农业生产经营，也可以从事非农业生产经营。农户担保、再担保的判定应以原担保生效时的被担保人是否属于农户为准。　　小型企业、微型企业，是指符合《中小企业划型标准规定》（工信部联企业〔2011〕300号）的小型企业和微型企业。其中，资产总额和从业人员指标均以原担保生效时的实际状态确定；营业收入指标以原担保生效前12个自然月的累计数确定，不满12个自然月的，按照以下公式计算：　　营业收入（年）=企业实际存续期间营业收入/企业实际存续月数×12　　《财政部 税务总局关于全面推开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的通知》（财税〔2016〕36号）附件3《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过渡政策的规定》第一条第（二十四）款规定的中小企业信用担保增值税免税政策自2018年1月1日起停止执行。纳税人享受中小企业信用担保增值税免税政策在2017年12月31日前未满3年的，可以继续享受至3年期满为止。　　七、自2018年1月1日起，纳税人支付的道路、桥、闸通行费，按照以下规定抵扣进项税额：　　（一）纳税人支付的道路通行费，按照收费公路通行费增值税电子普通发票上注明的增值税额抵扣进项税额。　　2018年1月1日至6月30日，纳税人支付的高速公路通行费，如暂未能取得收费公路通行费增值税电子普通发票，可凭取得的通行费发票（不含财政票据，下同）上注明的收费金额按照下列公式计算可抵扣的进项税额： 高速公路通行费可抵扣进项税额=高速公路通行费发票上注明的金额÷（1+3%）×3%　　2018年1月1日至12月31日，纳税人支付的一级、二级公路通行费，如暂未能取得收费公路通行费增值税电子普通发票，可凭取得的通行费发票上注明的收费金额按照下列公式计算可抵扣进项税额：　　一级、二级公路通行费可抵扣进项税额=一级、二级公路通行费发票上注明的金额÷（1+5%）×5%　　（二）纳税人支付的桥、闸通行费，暂凭取得的通行费发票上注明的收费金额按照下列公式计算可抵扣的进项税额：　　桥、闸通行费可抵扣进项税额=桥、闸通行费发票上注明的金额÷（1+5%）×5%　　（三）本通知所称通行费，是指有关单位依法或者依规设立并收取的过路、过桥和过闸费用。　　《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收费公路通行费增值税抵扣有关问题的通知》（财税〔2016〕86号）自2018年1月1日起停止执行。　　八、自2016年5月1日起，社会团体收取的会费，免征增值税。本通知下发前已征的增值税，可抵减以后月份应缴纳的增值税，或办理退税。　　社会团体，是指依照国家有关法律法规设立或登记并取得《社会团体法人登记证书》的非营利法人。会费，是指社会团体在国家法律法规、政策许可的范围内，依照社团章程的规定，收取的个人会员、单位会员和团体会员的会费。　　社会团体开展经营服务性活动取得的其他收入，一律照章缴纳增值税。财政部税务总局2017年12月25日　　　 　　 |